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2020 바뀌는 세금 미리 준비하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구분	2018.3.31 이전	2018.4.1~ 2020.3.31	2020.4.1~ 2021.3.31	2021.4.1 이후	2021.4.1 이후
코스피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 이상
코넥스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비상장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20. 4. 1.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투자의 이익과 손실을 상호 통산하도록 개정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개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세액공제

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	세액공제 한도(IRP 포함)	세액공제율
4000만원 이하(5500만원)	400만원(700만원)	16.5%
4000만~1억원 이하(5500만~1억2천만원)	400만원(700만원)	13.2%
1억원 초과(1억2천만원)	300만원(700만원)	13.2%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 이내의 모계 인척 -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 · 직계비속
경제적 관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사용인과 그 친족 - 나의 금전 ·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경영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 - 영리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목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제세공과금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벌금 ·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업무무관비용	법인 사용분이 아닌 장소 · 건축물 · 물건의 유지관리비, 업무무관자산 취득비용, 형법상 뇌물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중 실손해액 초과 지급액
감가상각비	상각한도 초과한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 초과한 기부금
접대비	한도 초과한 접대비
자본거래 손비	잉여금 처분 손비 계상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지급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 총당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이자